

제286회 임시회
2010. 1. 25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1월 14일
- 회부일자 : 2010년 1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의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,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 명칭 변경
 - 공유재산을 3분류 체계에서 2분류 체계로 단순화하여, "보존재산"을 "행정재산"에 포함하고, "잡종재산"의 명칭을 "일반재산"으로 변경
- 나.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기준 조정(안 제6조)
 -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금액을 **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**하여 자율성 확대와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기여하고자 함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,
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 명칭 변경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9174호, 2008. 12. 26. 공포, 2009. 4. 27. 시행)되어 "행정재산 및 보존재산"이 "행정재산"으로, "잡종재산"이 "일반재산"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.

나.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기준 조정(안 제6조)

- 물가·부동산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기준금액을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본 조례안은

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3분류 체계에서 2분류 체계로 단순화하고 물가·부동산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기준금액을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이 2008년 12월 26일 개정되었는데, 개정 조례안이 1년이상 늦게 상정한 이유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산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【타 시도 현황】

□ 시·도교육청

시도교육청	대장가액		비고
	2,000만원 이하	5,000만원 이하	
충남		○	
강원		○	
경기		○	
전북	○		
전남	○		
경북	○		
경남	○		
제주		○	
서울		○	
부산		○	
인천		○	
대구		○	
대전		○	
광주		○	
울산		○	

□ 광역자치단체(시·도)

시도	대장가액		비고
	2,000만원 이하	5,000만원 이하	
충북	○		
충남	3,000만원 이하		
강원		○	'09.09.25.개정
경기	○		
전북	○		
전남	○		
경북	○		
경남	○		
제주	3,000만원 이하		
서울		5억원 이하	
부산		○	
인천		1억원 이하	
대구		○	
대전		○	
광주		○	
울산	○		

붙임 :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.